

○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1072호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 
「건축공사표준시방서」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기준명 : 건축공사표준시방서

2. 구 분 : 부분개정

3. 개정목적

○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KS 기준이 상이한 문제에 대한 조치

-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이 KS M 2270(방습·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)의 품질기준과 상이하고,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품질관리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

4. 주요 개정내용

○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프라이머 품질기준에서 KS M 2270(방습·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)를 인용함으로써 KS M 2270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○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원재료인 아스팔트의 침입도(10~30 정도)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5. 관련단체 : (사)대한건축학회(☎ 02-525-1841)

6.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학회 (☎ 02-525-1841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[www.kcsc.re.kr](http://www.kcsc.re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